

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 공고

- 녹색·행복에너지 사랑나눔캠페인 -

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긴급지원센터

1 개요

□ 사업목적

- 저소득층(에너지 빈곤층) 전기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
-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

□ 사업지역: 전국

□ 지원대상: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전기제한공급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※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3년 간 재지원 불가

< 기초생활수급가구 세대유형별 현황 >

(단위: 가구)

| 구분 | 계 | 노인세대 | 소년소녀 가장세대 | 모자세대 | 부자세대 | 장애인 세대 | 일반세대 | 기 타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수급 가구수 | 854,205 | 243,132 | 14,276 | 82,880 | 19,744 | 162,527 | 291,680 | 39,966 |
| 비율(%) | 100% | 28% | 2% | 10% | 2% | 19% | 34% | 5% |

*출처 : 2008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, 보건복지가족부(2009)

□ 지원내용

- 미납된 전기요금을 에너지재단이 한국전력공사에 대납
-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만큼 지원
(주택용 6개월 평균 사용요금)

□ 지원제외대상

○ 비주택용 전기 미납금

※ 공업용, 소매상용도의 전기(고지서의 고객사항→계약종별에서 확인)

○ 통합관리비가 청구되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

※ 단,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

○ 수주택세대*일 경우 원천적으로는 제외되나,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이 될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추천 가능

* 하나의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세대

※ 고지서의 고객사항→ 가구수에서 확인(1이상의 가구는 수주택세대)

○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(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)

○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

□ 사업기금: 녹색·행복에너지사랑나눔기금

□ 신청기관: 기초자치단체(읍·면 동주민센터), 사회복지기관 한국전력공사사업소

□ 사업(신청)기간: 2010년 05월 3일 ~ 2010년 06월 18일

※ 우편소인기준

□ 제출서류: 신청 공문, 가구현황조사표(신청서식1-1), 생활실태 조사서(신청서식1-2),
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

2 추진체계

□ 추진체계

- 신청기관에서 3개월 이상 전기요금 미납 중인 저소득층가구 발굴시 한국에너지재단 [에너지긴급지원센터]로 신청서류 우편 제출
- [에너지긴급지원센터]는 신청서류 접수 시 전기요금 미납금 및 미납기간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 확정
- [에너지긴급지원센터]는 한전에서 지정한 계좌로 가구별 온라인 입금 후 대상가구 명단 통보
 - 신청기관에 지원 결과 통보

< 전기요금 긴급지원 추진체계도 >

